第285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2009年12月30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
11.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韓國國防硏究院法 일부개정법률안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2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3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36.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3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9.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40.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제품안전기본법안
4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附議된案件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5
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5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6
8.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6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6
10.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6
11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7
1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7
14.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15.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8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8
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 의원 대표발의)(서종표・백재현・김영진・안규백・조경태・심대평・김성곤・정동영・김충조・김장수 의원 발의) ····· 10
21. 韓國國防硏究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안상수・정의화・김충환・김태환・홍정욱・조진래・홍장표・이경재・이인기 의원 발의) ····· 10
2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장수 의원 대표발의)(김장수・이윤성・유승민・김무성・심대평・고승덕・김학송・김옥이・안효대・윤상현・김학용・김창수・강성천・원희목・우제창・주성영・김충환・박민식・강석호・서종표・김희철・강성종・김영우・김성회・김성곤・정미경・이한성・배은희・문희상・이계진・김소남 의원 발의) ····· 10
2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황진하・안경률・장제원・이범래・정갑윤・원유철・이인기・김소남・김성조・유정현 의원 발의) ····· 11
25.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2
3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2
33.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2
3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2
3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2
36.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정해걸・정희수・김충조・김영진・서갑원・우윤근・이한성・유정복・유성엽・김성곤・이인기・박준선・임영호・오제세・박기춘・신성범・여상규・임두성・정갑윤・김무성・임동규・김종률・송훈석・백재현・배영식・장윤석・박종근・권영진・현경병・서병수・정영희・안규백・김우남・유재중・안효대・이용희・김광림・최구식・이화수・나성린・김성수・이철우・이계진・이해봉・정양석・이시종・성윤환・이윤석・김희철・이낙연・신영수・김재경・김선동・고승덕・한선교・김태환・김영록・김을동・김낙성・조문환・정수성・조원진・이춘식・조진래・이사철・김태원・최병국・이진복・강기갑・권경석・윤석용・김영우・권선택・유기준・강석호・정두언・이경재・이학재・류근찬・이범관・김성태・김소남・김세연・김부겸・김정권・김용구・고홍길・정세균・김성조・노철래・김옥이・홍정욱・정진석・장광근・조배숙・안홍준・이두아・주성영・이범래・황영철・허천・최규성・박보환・주호영・주승용・이진삼・박순자・권택기・정장선・김효석 의원 발의) ····· 13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변재일・이계진・

황영철・정해걸・최철국・유선호・류근찬・주승용・이인기・유성엽・이윤석・양승조・김종률・조경태 의원 발의) ····· 14
3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4
39.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이낙연・곽정숙・이정희・최철국・심대평・강창일・홍희덕・권영길・최인기・유성엽・김우남・김영진・김성곤・이한성・변재일・김낙성・황영철・정해걸・조진래・김춘진・우윤근・허천・이진삼・이계진・강석호・이용희・김효석・조배숙・류근찬 의원 발의) ····· 14
40.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4
41.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4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여상규・정해걸・정갑윤・유재중・원희룡・윤석용・권영진・황영철・손범규・김재경・조진래・박상은・진영・권경석・김성태・이해봉・이군현・이계진・유성엽・현기환・정태근・유기준・박민식 의원 발의) ····· 14
4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14
4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14
4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14
4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기갑・신학용・김정권・김동철・강석호・한선교・안홍준・유성엽・박선숙・신성범・김성곤・김영진・심대평・권영진・김재윤・강기정・김종률 의원 발의) ····· 14
4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무성・이종혁・유재중・허태열・이진복・정의화・박민식・서병수・안경률・현기환・장제원 의원 발의) ····· 16
48. 제품안전기본법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오제세・이경재・안상수・홍장표・원유철・나성린・김동성・김태환・이성헌・정태근・김정훈・권영진・백성운・신지호・신성범・정갑윤 의원 발의) ····· 16
4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16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16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16
5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성태・안홍준・유기준・유정복・이두아・이성헌・이인기・이해봉・이화수・정희수・한선교 의원 발의) ····· 22
5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22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23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23
5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23
57.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3
5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3

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3
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3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보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안상수·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 23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보환·안상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 23
6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보환·안상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 23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3
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6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6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6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6
2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32
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32
o 5분자유발언 ····· 35

(17시48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지체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지체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아무튼 회의가 늦게 개최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51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김정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및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10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2건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3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6항은 상정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7항으로 넘어가서, 7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7시55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7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손범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손범규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손범규 의원입니다.

본 법률안은 현재 국민의 항소심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 중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의 보완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아 법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법원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고등법원 부가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손범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10.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11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58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8항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委員長代理 李珍福 너무 수고 많이 하신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동래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이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관한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1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8시05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2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혜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교적 쟁점이 덜한 4개 법률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쟁점이 많았고 소수의견이 있었던 3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효기간과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세의 본세 통합 연기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0년부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과세표준 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유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33%를 적용하기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2년간 35%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보한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비용으로 지불할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대해서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월세 비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소득공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월세 및 상가 임대소득에 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는 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와 공익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5%를 1년간만 공제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통과시킨 것인 만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꼭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이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기권 7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8시15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9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김충환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 갑 출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률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동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 의원 대표발의)(서종표・백재현・김영진・안규백・조경태・심대평・김성곤・정동영・김충조・김장수 의원 발의)

21. 韓國國防硏究院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안상수・정의화・김충환・김태환・홍정욱・조진래・홍장표・이경재・이인기 의원 발의)

2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장수 의원 대표발의)(김장수・이윤성・유승민・김무성・심대평・고승덕・김학송・김옥이・안효대・윤상현・김학용・김창수・강성천・원희목・우제창・주성영・김충환・박민식・강석호・서종표・김희철・강성종・김영우・김성회・김성곤・정미경・이한성・배은희・문희상・이계진・김소남 의원 발의)

(18시17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0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서종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서종표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률안이 위헌 판결이 난 법률로서 연금 수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연금액의 50%를 삭감하였으나 개정안은 현직 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다가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고,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 시 최저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을 단축하고 최저근속기간 28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전장관리와 자원관리로 이원화된 국방정보화 체계를 통합하고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입법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현행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서종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한국국방연구

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황진하·안경률·장제원·이범래·정갑윤·원유철·이인기·김소남·김성조·유정현 의원 발의)

25.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시23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4항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태원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태원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의 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의결기능이 없는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21에서 1000분의 19로 인하하고,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 및 부담금을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의 5.5%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7%로 인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김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제30항은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3.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8시29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3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강승규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강승규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 갑 출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부의한바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이광재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부의한바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희 의원 등이 발의한 12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기초조사제를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범규 의원, 최병국 의원, 김효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조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지표조사를 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 수리업과 전문문화재 수리업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강승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6.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정해걸·정희수·김충조·김영진·서갑원·우윤근·이한성·유정복·유성엽·김성곤·이인기·박준선·임영호·오제세·박기춘·신성범·여상규·임두성·정갑윤·김무성·임동규·김종률·송훈석·백재현·배영식·장윤석·박종근·권영진·현경병·서병수·정영희·안규백·김우남·유재중·안효대·이용희·김광림·최구식·이화수·나성린·김성수·이철우·이계진·이해봉·정양석·이시종·성윤환·이윤석·김희철·이낙연·신영수·김재경·김선동·고승덕·한선교·김태환·김영록·김을동·김낙성·조문환·정수성·조원진·이춘식·조진래·이사철·김태원·최병국·이진복·강기갑·권경석·윤석용·김영우·권선택·유기준·강석호·정두언·이경재·이학재·류근찬·이범관·김성태·김소남·김세연·김부겸·김정권·김용구·고흥길·정세균·김성조·노철래·김옥이·홍정욱·정진석·

장광근·조배숙·안홍준·이두아·주성영·이범래·황영철·허천·최규성·박보환·주호영·주승용·이진삼·박순자·권택기·정장선·김효석 의원 발의)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변재일·이계진·황영철·정해걸·최철국·유선호·류근찬·주승용·이인기·유성엽·이윤석·양승조·김종률·조경태 의원 발의)

3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39.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이낙연·곽정숙·이정희·최철국·심대평·강창일·홍희덕·권영길·최인기·유성엽·김우남·김영진·김성곤·이한성·변재일·김낙성·황영철·정해걸·조진래·김춘진·우윤근·허천·이진삼·이계진·강석호·이용희·김효석·조배숙·류근찬 의원 발의)

40.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41.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여상규·정해걸·정갑윤·유재중·원희룡·윤석용·권영진·황영철·손범규·김재경·조진래·박상은·진영·권경석·김성태·이해봉·이군현·이계진·유성엽·현기환·정태근·유기준·박민식 의원 발의)

4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4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4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4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기갑·신학용·김정권·김동철·강석호·한선교·안홍준·유성엽·박선숙·신성범·김성곤·김영진·심대평·권영진·김재윤·강기정·김종률 의원 발의)

(18시34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36항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정해걸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정해걸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인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영록 의원, 김우남 의원, 강기갑 의원,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곽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률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은 농어민의 입장에서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농어민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법률안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농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1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희상 정해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5인, 기권 5인으로서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임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무성·이종혁·유재중·허태열·이진복·정의화·박민식·서병수·안경률·현기환·장제원 의원 발의)

48. 제품안전기본법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오제세·이경재·안상수·홍장표·원유철·나성린·김동성·김태환·이성헌·정태근·김정훈·권영진·백성운·신지호·신성범·정갑윤 의원 발의)

4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8시50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47항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제품안전기본법안, 의사일정 제49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대안), 의사일정 제5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배은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장대리 배은희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국·공유 재산 중 건물 등에 대하여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건물에 대해서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료 면제는 국·공유 재산 관련 법률의 취지 및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 제품안전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 조사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을 규정하며 제품안전관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일부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들이 사업자에게는 과중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부의 권한발동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처벌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탄광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조문 전체를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최철국 의원, 김재균 의원님, 홍장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둘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국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임원 임명절차,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에 대한 지역난방 이용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할 것, 둘째 7%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관으로 동일인의 주식 소유 상한을 정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3%로 규정할 것, 셋째 연료비연동제검증위원회에 사용자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이상 3개 항을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여 지식경제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권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희상 부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박종희 의원, 노영민 의원, 임동규 의원, 박상돈 의원, 조승수 의원 및 김성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각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조정 신청 및 심의기간 명확화를 위해 신청기한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전과 그 이후는 90일 이내로, 심의기간은 신청 후 1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둘째 사업조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위탁거래 약정 사항에 기술개발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배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제품안전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품안전기본법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노영민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의 노영민 의원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동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동 개정안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나 SSM이 동네 상권에까지 진출하여 수많은 소형 슈퍼, 구멍가게 등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상에 그간 입법 미비 사항이었던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사업조정 권고를 해 보았자 밤에 간판을 내걸고 불시에 영업을 개시하는 등 일시정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사태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심사 시에 외교통상부의 WTO·GATS 및 우리가 향후 체결할 FTA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로 이러한 내용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통상으로 먹고 사는 국가라 해도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WTO·GATS 및 FTA 규범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헌법적인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표되는 WTO 및 FTA는 헌법 밑에 있는 규범입니다.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입니다.

헌법상 경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는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농어업 보호, 지역 균형 발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은 외면한 채 WTO·FTA 위반 가능성만 탓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국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법사위 소회의장에 와서 WTO 및 FTA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의 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외국의 당사국에게 우리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당당히 설명해 보았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WTO 및 FTA 위반 가능성 역시 본 수정안의 규제가 국내 규제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

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WTO에서 유통 부분에 대한 분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저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여야, 정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 대·중소기업 상생법 수정안은 외국의 대형마트나 SSM의 우리나라 진입을 저지하자는 목적의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지역별로 한정된 상권에서 제로섬게임에 불과한 이들 대형 사업체와 생계형 소상공인 간에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현재 대·중소기업, 기업 사업 조정 중인 140여 건의 조정을 원활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는 첫째 사업조정 권고 내용에 서비스 업종의 사업 조정이 명확히 포함되게 재화·용역·영업시설·영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둘째 대기업 등이 사업 개시 등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 수정안은 대형마트나 SSM 진출로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사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87만의 소상공인들이 소박한 일터를 지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노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원회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의 그런 말씀, 기본적인 말씀에 동감하지 않을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법의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기까지의 진행 경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서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의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방금 말씀하신 권고에 대해서 어떤 이행을 하지 않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또 공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그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조정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서 대기업 등이 이를 회피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표를 한 후에도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벌칙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우리 WTO GATS 16조의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 공표는 하되 이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안심사를 한 소위의 위원들이나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한 법사 위원들의 합의로 처리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조정의 최종권고와 달리 중간 단계의 잠정적인 조치인 일시정지에 대해서 형벌로써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사 위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조정 권고 내용의 추가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법안에 보면 생산품목

이나 수량 또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축소, 영업일자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법에 해당 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 또 이로 인한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논란을 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전체 국익 차원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동 법률의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사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좋겠지만 법사위원 모두가 부득이하게 여야 합의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이러한 수정의결을 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결, 원안에 대해서 찬성표결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주광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온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아마도 지경위 소속 위원님이나 또 법사위 소속 위원님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 개정안과 또 수정안 그리고 왜 찬반토론이 벌어지는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를 해 주신 배은희 의원님의 심사보고 마지막 말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면 사실은 이 수정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과도하게 그 권한을 넘어서서 또 해석을 잘못하여 이것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라왔기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시면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하셨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 원안대로 이 상생협력법이 통과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사위 개정안은 우리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법으로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위 대안이 지난 28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일시정지 이행명령 조항의 신설,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조정 내용을 유통업에 맞게 영업일수, 영업시간, 영업품목, 의무휴일일수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한 부분만 하더라도 GS슈퍼 등 다섯 곳이 넘습니다.

이런 현행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 권고를 했을 경우에라도 대기업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이, 즉 이행명령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현행 법률상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등을 추가해서 유통업·서비스업을 이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법사위 개정안은 중소상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경위 대안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 모두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상임위 차원의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WTO 위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체결될 FTA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제33조의 영업일수, 영업시간, 취급품목 제한 등이 WTO 서비스 협정에 따른 경제적 수요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생법에서는 이미 제조업의 생산시설 생산품목에 대해서 사업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조정은 규제보다도 약한 조정이

기 때문에 이는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 조치에 해당하여 WTO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WTO 서비스 협정에 따른 유통 부분의 분쟁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앞서 노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생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측도 또 입법조사처도,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동의를 해서 지경위에서 전원 합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께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법사위에서 왜 개정했는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권고·공표는 할 수 있지만 이행명령은 문제이고 또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현재의 제조업 중심으로 된 상생협력법에 이 조항은 그대로 있는 조항들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유통·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것뿐이지 이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WTO 충돌을 말씀하시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이것은 제소된 바도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국내 조치는 WTO 서비스 협정에서도 양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WTO 협정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모처럼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찬성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찬성을 즐겨하시는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도 반드시 찬성해 주셔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 의원님은 저하고 친합니다.

(웃음소리)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애초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누더기 법안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의 거대 자금력에 가위눌려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상권의 절규가 일촉즉발의 직전입니다.

전국의 소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에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 3명 중 1명꼴인 37.5%가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48%가 폐업 후에 마땅한 생계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 정도로 줄어든 매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절반에 가까운 43.1%의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철거된 시장 37개를 조사해 본 결과 3분의 1에 이르는 12개 시장이 반경 1㎞ 안에 대형 마트나 SSM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지금 대한민국 골목 어디를 다녀 봐도 상인들의 절망에 찬 한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들 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18대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언론 보도나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 조정 신청이 있으면 시설과 품목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두도록 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생산품목과 수량·

시설만을 축소하도록 해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원안 수준으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주요 내용이 모두 삭제된 채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누더기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면 도대체 왜 그토록 수없는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 의결을 한 것입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지식경제위원회와 여야의 합의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영업 허가제와 영업시간 제한은 WTO 협정에 위배되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허가제와 영업시간 제한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차별 없이 실시되고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면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과 같은 WTO 회원국도 신규 진출, 영업시간과 품목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WTO를 내세우며 대규모 점포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시간에도 중소상공인들은 쓰러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통에 관련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등 10여 건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과 대규모 유통망을 앞세워 동네 구멍가게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윤리도 그렇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많은 법률과 국회 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수없이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WTO 서비스무역협정 및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부만 대형 유통회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누더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정치권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재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64인, 반대 93인, 기권 23인으로서 노영민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에 찬성 111인, 반대 39인, 기권 34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성태·안홍준·유기준·유정복·이두아·이성헌·이인기·이해봉·이화수·정희수·한선교 의원 발의)

5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5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57.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보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안상수·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6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보환·안상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6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보환·안상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9시29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52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강성천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7건과 노동부 소관 6건,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심의 대상을 규정한 법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법안의 미비점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등 4건의 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려는 법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화수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폐지, 환경상품 구매 촉진 기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섭 의원과 서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공동방지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부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수희 의원, 김재균 의원, 손숙미 의원,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의 육아휴직 조건 완화, 입양자녀의 육아휴직 대상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의 시·도지사 수행,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보장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징수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징수 통합의 시기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재철 의원과 정진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한국산재의료원의 근로복지공단 통합,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시 재지정 금지기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강성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5인,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가운데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가운데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가운데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71인, 반대 1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두 분 투표하실 겁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가운데 찬성 176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가운데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가운데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80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여기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깜빡하고 투표 안 하시는 분들도 다 보입니다. 정의화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웃음소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80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여기 유일호 의원님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됐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가운데, 만장일치입니다. 찬성 180인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가운데 찬성 178인, 만장일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6항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9시49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진섭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 정진섭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120여 건의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들 1건의 대안과 3건의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탁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주체를 해당 공공단체로 명확히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은 정원이나 직급의 조정이 없이 명칭만 사무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 전 180 이내에 궐원된 경우 승계를 금지하던 것을 120일 내에 궐원되면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50배 과태료 제도를 보완하여 부과 기준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였고, 시도별 광역 지방의원 총 정수는 현행과 같이 자치구·시·군의 2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평균 인구 수 상하 60%의 인구편차가 적정수준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획정한 결과 총 정수는 지역구 기준 630개소 3%인 20개가 증가한 650개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2010년도에 있을 8개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제를 도입하였으며,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는 정당이 추천한 순에 따르고 정당의 추천순위가 없는 경우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가 추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명씩을 추천하도록 하고, 군지역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정치의 실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입후보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의 시기를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가 입후보한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제도를 신설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해당 선거별 기탁금의 20%를 납부하고 그 후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등인 경우,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 공무원 등인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직계 존·비속도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 중 지정한 각 1인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후보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대통령선거에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현행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던 것을 선거일 전 1년부터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홉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송신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을 허용하였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자동송신 방법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일정 고지를 비롯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선거사무원 외에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열한 번째, 현행 공직선거법상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된 부분들을 정비하였는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그 기관의 명의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선거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에 한하여 선거기간 중에만 개최를 금지하였고,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에 한하여 답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선거 비용의 보전 범위와 관련하여 전화요금, 음식물 비용 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열네 번째,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투표소에 가서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송부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정규 시설 안에서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부재자신고인을 3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30인 미만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정당 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수투표자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과 선거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비밀투표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처벌하기로 하였고,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운동도 할 수 없도록 제60조와 제85조의 규정을 보완하였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에 따른 금품 등 제공행위 외에도 선거브로커의 금품 수수, 거액의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등록 대상 간부의 범위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어 등록 및 변경등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간부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까지 확대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고,

셋째,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 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의 요청 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신용카드 이용 등과 같이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 지출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어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라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 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의 공약집과 선거운동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윤성 정진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안설명이 길었는데도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한 분도 안 나가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하동 출신 여상규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2조1항은 시도 광역의원의 경우 시·군·구마다 2인씩 그렇게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가 너무 커서 위헌이다라면서 4 대 1 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헌재 판결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졸속입법입니다.

어제 성안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법사위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지금 의원님들께 의견수렴한 적 있습니까? 피해 의원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헌법재판소는 4 대 1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덜 적절한 안도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인구 5만이 넘는 군이 4 대 1 비율에 1000명 부족하다 해서 1명 감축되었습니다. 판결 취지에 반하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만 명 미만의 군도 1명, 5만 명이 넘는 군도 1명입니다. 이게 판결 취지에 맞습니까? 1 대 4 비율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 1명에 도의원 1명 이런 군 과연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 중층구조를 잘못 이해해서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은 기초의원의 경우 주민대표성을 인정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대표성을 기준으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느닷없이 지역대표성으로 뽑게 되어 있는 광역의원을 주민 대표성으로 뽑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재가 아주 부당하게도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 외국의 입법례를 보십시오. 지역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상원의원은 아주 많습니다. 미국 경우에 인구에 상관없이 각 주마다 2인씩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유엔의 예를 들어 봅시다. 유엔은 국가대표성으로 각 국가에서 1명씩 대표를 파견해서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다 해서 10명의 대표를 요구하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1명, 중국은 10명, 옳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재의 잘못된 판결까지 추종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구편차 공식까지 만들어서 적용합니다. 알량할 뿐입니다.

지금 국회가 헌재의 하부기관입니까? 헌재의 판결문이나 문구 하나하나 문리해석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국회의 입법형성권, 국회의 정책형성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뿐만 아니라 개정 조항의 한시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정 조항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선거, 그거 한 번만 적용되는 법일 뿐입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나면 다시 전면 개정을 해야 합니다.

광역의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이렇게 일회성의 법률, 한시적인 법률로 우리 농산어촌민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되겠습니까?

도시지역 의원님들께 하소연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발 최소한의 배려는 좀 해 주십시오. 줄어든 농어촌 인구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도시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광역의회의원 한 사람 더 뽑아서 뭐가 잘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농어촌 없이 도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더 숙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2월에 가서 개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지금 12월 31일이 지나면 이 공직선거법 22조1항은 무효가 됩니다. 그 효력이 없어질 뿐입니다. 선출 절차가 개정 전에 있지 않는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광역의회 의원 지위에 아무런 변동 없습니다. 일 하는 데 아무런 변동 없습니다. 2월 달에 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이미 헌재가 제시한 기간을 넘겨서 개정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정권법도 그렇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의 예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정안들이 여러 가지 나왔다가 결국 좀더 논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정안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졸속으로 입법된 이 개정안은 부결을 해서 2월 국회에서 다시 얼마든지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여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議員 장윤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여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장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가 많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헌재가 광역의원 선거구에 관해서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해서 헌법불합치 하니 조정해 달라는 내용에 따른 광역 선거구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밖에 여성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은 우리 정진섭 의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현재 광역의원은 시·군·구마다 2인을 두게 해서 한 6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선거를 했는데 2만도 안 되는 도시에도 2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하고 30만에 가까운 도시도 광역의원 2명을 배출하니까 인구 편차가 1 대 15입니다. 아마 30만 가까운 도시의 인구 비율로만 하면 30명의 광역의원을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 편차가 너무 크니 유권자인 국민의 투표가치가 너무 불평등하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인구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지방 각 지역은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만으로 조정하면 1 대 1이 되겠지요. 그러나 행정구역 문제라든지 또 지세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지리적 조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1 대 4까지의 인구 편차는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1 대 4 정도에서 광역 선거구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은 1 대 3의 편차에서 조정을 하고 그 1 대 3의 편차를 넘어 서면 예를 들어서 하한이 10만 5000이고 상한이 29만, 30만인데 31만, 32만 되면 분구로 해서 증원을 해 주지요.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정개특위에서 이 광역 선거구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30여 명의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 1 대 4의 편차를 반영하니까 인구 때문에 광역의원 수가 다소 늘어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감소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감소하는 지역이 35개 지역이고 증가하는 지역이 4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은 불가피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석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역 대표성을 위해서 인구와 관계없이 시·군·구에 1명의 대표는 보장하자는 규정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가 1만 5000이든 1만 7000이든 2만이 안 되도 1명을 보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대표성은 감안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다만 현재 2명이니까 2명을 보장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보장하게 되면, 광역의원 수를 1 대 4의 인구 편차로 조율을 하다 보면 한 1000명 이상 증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명을 보장하고 오늘 법안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인구만 가지고 하느냐?' 인구만 가지고 했다면 1 대 1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1 대 3, 광역의원은 부득이 1 대 4 범위 내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여 의원 말씀 중에 주민대표성 지역대표성 해서 기초·광역을 연방의회의 상·하원론에 비유를 하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뽑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을 감안해서 뽑는 것이지만 처리하는 사무는 동일한 사무입니다. 상·하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같은 국가사무를 가지고 상원도 하고, 하원도 하고, 독립해서 하기도 하고, 합동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의 기초와 광역은 각자의 지방자치사무를 각자가 할 뿐입니다. 합동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취급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하원 비유는 사실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개특위 이 법안은 사실 꽤 오래전에 구성됐던 정개특위에서 여러 차례, 10여회 이상 소위를 열고 논의를 해서…… 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마련한 법안입니다.

또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서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정개특위입니다. 거기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보낸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정개특위에서 보낸 안이 좀 섭섭하고 또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번에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개특위가 두 달 연장이 됐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두 달된 기간에서 정개특위가 또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윤성 장윤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토론을 찬성·반대 2명으로 제한을 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반대·찬성 두 분이 전부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에도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개특위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정당법 관련 소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순리에 따라서 토의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법은 공직선거법 관련 소위에서 토의된 것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때 제가 이의를 달았던 사항입니다.

여기 8조7항 두 번째에 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왜 교섭단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성의 편의를 위해서 구성한 그러한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에 나오는 용어를 공직선거법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이러한 말 대신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2명' 혹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라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하지만 꼭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러한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용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00인, 반대 43인, 기권 31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8항～제30항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0시18분)

○부의장 이윤성 의사일정 제2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보환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의 연구결과가 불량할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윤성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기관장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원장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에서 전체 재직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박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반대만 해 가지고요.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의2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

로 결정된 경우에 향후 5년의 범위 내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아주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해서 좋을 것은 없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패가 너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연구에는 실패한 연구와 성공한 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는 연구와 더욱더 열심히 계속 해야 할 연구만 있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하다, 불량하다 하는 것도 많은 경우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교과부가 실패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 기업, 또는 실시 기업이 향후 5년간에 다른 연구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실패한 연구가 나올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이러한 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의 연구를 규정해서 앞으로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는 연구원에게 제약을 가하고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실패하지 않을 만한 연구만 골라서 하는, 도전하지 않는 과학기술계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 '지식경제' '지식경제' 하지 말고 이렇게 지식경제에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개정안 제11조의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항 중에서 한 조문만 삭제해서 수정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11조의2제1항의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이 조항만 삭제해서 수정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서 모험을 사랑하고 도전하는 과학기술계를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이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議員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송파 갑 출신 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저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오래 종사하시면서 생각하신 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본 의원도 과학적 탐구와 기술개발에 대해 우리 사회와 재정당국 등 정부가 보다 관대하고 실패를 허용할 때 진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풀뿌리 기초연구에 있어서의 지원을 강조해 왔고 관련 예산의 지원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진정한 과학기술의 기반 강화, 세상을 바꿀 기초·원천기술 개발 또한 수많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모험적 연구의 경우 성실한 실패자에 대하여 이용경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최소한의 성실한 연구생활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예를 들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서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또한 출연한 연구비를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대비 10.5%가 증액된 13조 6000억이나 됩니다. 급증하는 R&D 예산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의식

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로서 동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 조항은 모든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의적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극히 불량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 불성실한 연구자에 대해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금번 개정되는 이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있던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법으로 상향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타 법에서도 동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이미 법제화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박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류근찬 의원 의석에서 — 교과부가 안 나와 있어도 됩니까, 절차상?

수정안인데 아무도 안 나와도 돼요?

조금 전까지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잠깐만 있어 봐요.

류근찬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교과부장관이 국회에 참석해 있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갔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28인, 반대 15인, 기권 17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건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이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모두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거듭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당에,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양보안을 가지고 야당과 다시 한번 더 대화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만큼 중요한 우리 국회의 할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의 고유 기능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명한 판단 그리고 역사적인 책무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지도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전 국민이 내일 이 국회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국회를 만듭시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 등과 관련한 법사위원회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가 되어야 예산안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은 법사위원 여러분과 모든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법사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자구 심사, 체계 수정하는 곳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예산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까지 법사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물을 건너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 여러분!

오늘 밤 12시까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서 주요 법안들을 심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예산, 국민의 생명선입니다. 나라의 동맥입니다. 우리가 꺼뜨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

o 5분자유발언

(20시35분)

○의장 김형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 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인에 대한 단독 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8월에 배임 및 조세 포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별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무력화하며 특권층의 특권, 유전무죄를 선언하면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5면에 이번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대한 정부와 삼성의 빅딜설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단독 특별사면 된 배경을 두고 삼성그룹 신규 사업 부문이 세종시에 가는 쪽으로 정부와 삼성 측 간에 이른바 빅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주요 기사 내용입니다.

즉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 문제가 걸려 있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중 한 곳을 세종시로 보내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정부와 약속하고, 정부는 이건희 회장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역사상 처음 있는 경제인 단독 사면이라는 아주 특별한 특혜 사면을 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의 신규 사업 부문이 무엇이고, 이전할 계열사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2월 22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그룹 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충남 아산의 탕정에 있는 삼성전자 LCD 산업의 일부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 둘째 경기도 수원의 디지털단지 일부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핵심사업 분야인 바이오시밀러(biosimilars) 사업에 진출하며 이를 세종시에 입주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들 논의 내용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으로 지역 대결과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10일에 대구와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첨복단지는 첨단 의료산업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서 첨단 생명과학과 신약 및 바이오 약제 개발 등 제약산업 육

성 등이 핵심입니다.

결국 정부가 삼성그룹과 논의하고 있는 첨단생명공학 산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면 생명공학과 제약산업의 다른 기업들도 세종시로 몰릴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와 오송은 죽습니다. 대구와 오송에 건설하기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어떤 기업도 들어오지 않는 황량한 벌판이 될 것이고 기껏해야 기업 몇 개가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

첨단의료산업의 메카 대구, 생명공학의 메카 오송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입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두신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가 과학기업도시가 되면 자기 지역구의 좋은 기업들을 빼앗기게 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가 아닌 다른 대안은 이와 같이 지역 간 대결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안이 아닙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원안이 아닌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놓더라도 그것은 지역 간 대결과 분열 조장, 국론 분열, 그리고 전 세계 무한경쟁 시대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체, 아니, 퇴보를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대결과 대립, 대한민국의 분열과 퇴보를 끊는 길은 오직 세종시 원안 추진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원희룡	원희목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임태희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유기준	윤석용	이인기	진 영

기권 의원(4인)

구상찬	권영세	서종표	이혜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69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임태희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영택 조윤선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세연 김정권 이혜훈 조원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태희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성윤환

기권 의원(1인)

김동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7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선동 김성조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5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선영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8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김 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영애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용경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5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3인)

고승덕 박희태 이한구

기권 의원(3인)

이용경 이종구 전여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2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7인)

고승덕 권성동 김무성 나성린
박선영 이용경 전여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8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2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승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곽정숙 홍희덕

기권 의원(2인)

이상민 이한구

○韓國國防硏究院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2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태원 신성범 정해걸 황영철

(송영선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82인, 기권 의원 4인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5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이용경 조승수

(이혜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5인, 기권 의원 없음)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박선영 조승수

기권 의원(1인)

강승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9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춘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정권 최철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성윤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박선숙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공성진 류근찬 신성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성천 이춘석

(구상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8인, 기권 의원 2인임)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용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2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5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승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강승규 이명규 이용경 장광근
조윤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5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곽정숙 정태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황진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병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1인, 찬성 의원 181인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5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영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영희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박은수 신성범

○제품안전기본법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1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오제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차명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애주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 용 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64인)

강 성 종	강 운 태	곽 정 숙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용 구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창 수	김 효 석	노 영 민	류 근 찬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지 원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종 표	송 영 길	안 규 백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유 선 호
이 계 진	이 사 철	이 석 현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종 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혜 훈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장 제 원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몽 준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최 연 희
최 철 국	허 태 열	홍 사 덕	황 영 철

반대 의원(9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홍 길	공 성 진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김 금 래	김 무 성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옥 이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나 성 린
노 철 래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성 운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신 성 범
신 지 호	안 경 률	안 형 환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일 호	유 정 현	윤 상 현	이 경 재
이 두 아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애 주	이 은 재	이 정 선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화 수	장 광 근	장 윤 석
전 여 옥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해 걸	정 희 수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윤 선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병 국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3인)

고 승 덕	권 택 기	김 기 현	김 성 태
김 영 우	김 용 태	김 혜 성	서 병 수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유 정 복	윤 석 용	윤 영	이 명 규
이 인 제	이 종 구	정 갑 윤	정 병 국
조 원 진	현 기 환	홍 정 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11인)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홍 길	공 성 진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성 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나 경 원	나 성 린
노 철 래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신 성 범	신 지 호	안 경 률	안 형 환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이 경 재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이 은 재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장 광 근	장 윤 석	전 여 옥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희 수	조 순 형
조 윤 선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병 국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9인)

강성종 강운태 곽정숙 김낙성
김용구 김재균 김창수 김춘진
김효석 노영민 류근찬 박병석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변웅전 서종표
안규백 안홍준 양승조 오제세
이용경 이용섭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회창 임영호 장제원
전현희 전혜숙 정장선 조승수
주승용 최철국 황영철

기권 의원(34인)

강명순 권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용태 김태환
김혜성 백재현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계진 이사철
이석현 이인제 이학재 임동규
정갑윤 정병국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최연희
현기환 홍정욱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5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안상수 정옥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명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3인)

강길부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이계진

기권 의원(3인)

강명순 이상득 황영철

(김성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3인, 기권 의원 3인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1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강성종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공성진 최구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9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박영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9인, 기권 의원 없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정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선숙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용섭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송광호 최병국

기권 의원(2인)

박희태 장제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00인)

강승규	강운태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옥이
김용태	김재윤	김 정	김정훈
김진표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혜성	나경원	노철래	박병석
박보환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신상진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윤상현	이경재
이두아	이범관	이병석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인기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수성	정옥임	정진석
정진섭	조순형	조윤선	조진형
주광덕	진수희	차명진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일표	홍준표	황진하

반대 의원(43인)

강석호	고승덕	공성진	구상찬
김낙성	김무성	김영록	김용구
김충환	김학용	김효석	류근찬
박대해	박상돈	박상은	박종근
서종표	송광호	송훈석	신성범
여상규	유기준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석용	이용경	이진삼
이혜훈	임영호	정병국	정의화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진래
주성영	진 영	최구식	허원제
홍사덕	홍정욱	황영철	

기권 의원(31인)

강길부	강명순	김광림	김성태
김영우	김재균	김춘진	박민식
박순자	박영아	송영선	유일호
유정현	윤 영	이계진	이명규
이사철	이은재	이정선	이화수
장제원	정양석	정태근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진성호	현기환	황우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65인)

강길부	강석호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충환 임영호

기권 의원(9인)

강명순 구상찬 김낙성 김무성
류근찬 박상돈 송영선 이계진
황영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63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인)

김정권 박대해 박상돈 안홍준
유기준 임영호 황영철

기권 의원(5인)

구상찬 김낙성 이계진 이종구
장제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2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박대해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영호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5인)

강운태 권성동 김낙성 김 정
김정권 류근찬 박병석 박상돈
배은희 서갑원 서종표 송영선
안홍준 양승조 이용경

기권 의원(17인)

구상찬 김성식 박은수 배영식
송훈석 윤석용 윤 영 이학재
이화수 전병헌 정하균 정희수
조원진 진 영 홍사덕 홍정욱
황영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0인)

강길부 강석호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춘식 이학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정권 류근찬

기권 의원(8인)

강명순 김낙성 윤 영 이진삼
이혜훈 장제원 정해걸 황영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강운태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근찬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경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순형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연희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조경태

기권 의원(2인)

윤 영 정옥임

○출석 의원(262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72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임동규
임태희	장광근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82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강운태	고홍길	김금래	김기현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회
김영선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형오
김혜성	나성린	노철래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은수	박지원	배영식	서종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안홍준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윤석용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애주	이용경	이인기
이정선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임동규	임영호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정미경
정병국	정진석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해진	진수희	차명진	최구식
최연희	허 천	현기환	홍재형
황영철	황진하		

○청가 의원(1인)

김효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입법차장	안병옥
의사국장	이종후

○출석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태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환경부장관	이만의
노동부장관	임태희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금융위원장	진동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이석현·강기정·김유정·김효석·문학진·안민석·양승조·우제창·전현희·전혜숙·조경태·조배숙·최규식·최영희·

최철국·홍영표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진영·강명순·강용석·고승덕·구상찬·권영세·권영진·김동성·김성곤·김정권·김창수·김태원·박근혜·박준선·박진·송민순·신상진·안상수·안효대·여상규·원희룡·유기준·유성엽·유일호·이명수·이범관·이성헌·이종혁·이해봉·이혜훈·임영호·정영희·정의화·정희수·현기환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遠隔映像裁判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國際商去來에있어서外國公務員에대한賂物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罰金等臨時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法院災難에基因한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執行官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憲政秩序破壞犯罪의公訴時效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仲裁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8건 2009. 12. 29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조승수·홍영표·김영진·김재균·강창일·최영희·홍희덕·권영길·유원일·강기갑·이종걸·김상희·곽정숙·조정식·박선숙·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29건 12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송훈석·이윤석·김우남·정해걸·정갑윤·이화수·이사철·김영우·홍희덕·임동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송훈석·김우남·정해걸·이계진·이윤석·정갑윤·김낙성·임동규·정희수·이화수 의원 발의)

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개정법률안

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防潮堤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30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김춘진·안민석·김영진·최재성·박은수·박지원·김부겸·신학용·조영택·정범구·유원일 의원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김춘진·박은수·이용경·안민석·김영진·최재성·박지원·김부겸·신학용·조영택·유원일 의원 발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김춘진·이용경·안민석·김영진·최재성·박은수·박지원·김부겸·신학용·조영택·유원일 의원 발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김춘진·이용경·안민석·김영진·최재성·박은수·박지원·김부겸·신학용·조영택·유원일 의원 발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이인기·정수성·유기준·한선교·이해봉·김효재·박선영·이경재·이학재·이시종·송영선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9. 12. 29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추미애·강창일·김우남·김동철·김재윤·유성엽·이종걸·김춘진·조영택·이찬열·배영식·원혜영·김상희·박선숙·이인기 의원 발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추미애·강창일·조배숙·김동철·김재윤·유성엽·이종걸·이성헌·김춘진·조영택·이찬열·원혜영·김상희·박선숙·홍희덕·이인기 의원 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추미애·강창일·김동철·김재윤·유성엽·이종걸·이성헌·김춘진·조영택·이찬열·원혜영·김상희·박선숙·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高速國道法 일부개정법률안

密航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3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3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戰鬪警察隊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遺失物法 일부개정법률안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警察大學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警察職務應援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運動組織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이인기·유기준·이해봉·정수성·김효재·박선영·이경재·이학재·이시종·송영선 의원 발의)

이상 15건 12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이정선·원희목·손숙미·송영선·정병국·이종혁·이성헌·권영세·김우남·정미경·이명수·이한성·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特定硏究機關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標準時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서갑원·김창수·김영진·신학용·이찬열·조영택·오제세·양승조·박선숙·전병헌·최재성 의원 발의)
12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2009. 12. 29 행정안전·보건복지가족위원장 제출)
外國人의署名捺印에關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政府代表및特別使節의任命과權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3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3건 2009. 12. 30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30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9. 12. 29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9. 12. 2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30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09. 12. 2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9. 12. 23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29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09. 12. 29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09. 12. 30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30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30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09. 12. 28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정무위원장 보고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31 정부 제출)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29 정부 제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28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2 정부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5. 27 정부 제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2 서병수·정갑윤·최구식·신성범·유재중·김세연·정해걸·이진복·박민식·여상규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9. 9. 15 안홍준·유승민·유정현·임동규·강성종·이인기·이진복·최철국·현경병·원유철·이해봉·김충환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최경환·이한성·정양석·장윤석·백성운·나성린·유승민·김효재·강길부·김광림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9. 3. 12 김효석·박선숙·추미애·이미경·오제세·박지원·김희철·김진표·이용섭·우제창·최인기·백재현·박병석·정세균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9. 8. 12 임영호·이재선·김영진·이진삼·권선택·김창수·이명수·박상돈·심대평·김용구·류근찬·오제세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 의원 대표발의)
(2009. 6. 30 강운태·이윤석·노철래·노영민·김재균·유성엽·강기정·송민순·김영록·최인기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09. 9. 1 김성식·권영세·유승민·송광호·임해규·정태근·이정현·김성태·신성범·권영진·주광덕·정양석·정병국·남경필·윤석용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28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08. 8. 20 박지원·이미경·김희철·박종희·김재윤·최규성·박선숙·박주선·김성태·이진삼·양승조·강창일·서종표·유성엽·장세환·박기춘·유선호·양정례·김우남·최문순·임영호·박상돈·이명수·안형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발의)
(2008. 11. 7 백재현 의원 외 82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9. 3. 12 김효석·박선숙·추미애·이미경·오제세·박지원·김희철·김진표·이용섭·우제창·최인기·백재현·박병석·정세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9. 5. 25 오제세·변재일·김춘진·임두성·이한성·김창수·양승조·김영진·유성엽·이해봉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9. 8. 12 임영호·이재선·이진삼·권선택·김창수·이명수·박상돈·심대평·김용구·류근찬·오제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 의원 대표발의)
(2009. 6. 30 강운태·이윤석·노철래·노영민·김재균·유성엽·강기정·송민순·김영록·최인기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9. 8. 31 이용섭·박은수·양승조·김재균·김영진·김동철·이미경·송민순·이성남·김재윤·김성순·박선숙·최인기·김종률·

송영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28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0. 28 이정희·오제세·유성엽·조영택·권영길·홍희덕·강기갑·곽정숙·이종걸·조승수·김상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09. 9. 1 김성식·권영세·유승민·송광호·임해규·정태근·이정현·김성태·신성범·권영진·주광덕·정양석·정병국·남경필·윤석용 의원 발의)

(이상 2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5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장수 의원 대표발의)

(2009. 6. 4 김장수·이윤성·유승민·김무성·심대평·고승덕·김학송·김옥이·안효대·윤상현·김학용·김창수·강성천·원희목·우제창·주성영·김충환·박민식·강석호·서종표·김희철·강성종·김영우·김성회·김성곤·정미경·이한성·배은희·문희상·이계진·김소남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방위원장 보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9. 2. 23 권경석·황진하·안경률·장제원·이범래·정갑윤·원유철·이인기·김소남·김성조·유정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8. 9. 5 임두성·김소남·정해걸·손범규·윤석용·박보환·김성수·문국현·윤두환·김무성 의원 발의)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08. 8. 5 허천·구본철·신상진·김영우·이한성·황영철·이경재·송훈석·박상은·손범규·김성수·이계진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08. 7. 7 김정권·정두언·한선교·김희철·송민순·양정례·이성헌·김재경·최철국·김효재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 안경률·이한성·유기준·임동규·유성엽·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박기춘·원유철·김성곤·유정현·권경석·이무영·정두언·이인기·정갑윤·정영희·허천·신성범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08. 7. 1 이성헌·김소남·강성천·김정권·안효대·임두성·현기환·황영철·강명순·신성범·이달곤·이범래·홍정욱·김세연·임태희 의원 발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8. 8. 5 이낙연·김영진·김태원·박기춘·강창일·이성헌·이화수·박선숙·안상수·권영진·정양석·김성태·신학용·신상진·이한성·박선영·김성곤·이진삼 의원 발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08. 8. 22 이재선·원희룡·이상민·이학재·우윤근·박선영·김성곤·정영희·양승조·이인기·김금래·김정권·윤석용·허태열·임동규·안상수·심대평·김충조·구본철·오제세·박지원 의원 발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8. 8. 27 한선교·김정권·김효재·김무성·김정훈·김옥이·이명규·조전혁·서상기·유기준·유승민·원희룡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7 정부 제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08. 11. 5 김태원·신지호·손범규·유성엽·정영희·나성린·고승덕·이종혁·이화수·김성수·정하균·원유철·안상수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8. 12. 5 이혜훈·서청원·유승민·양정례·권영진·구상찬·유일호·손범규·이성헌·

정양석·김옥이·신상진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2. 11 이명수·이윤석·임영호·정희수·김용구·원유철·이영애·강봉균·이진삼·박선영 의원 발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8. 12. 30 이인기·유기준·김무성·원희룡·성윤환·유성엽·이한성·김기현·안상수·김태원·손숙미 의원 발의)

(이상 1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21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29 정부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박영아·고승덕·권영진·김성회·김세연·서상기·안경률·유일호·윤상현·윤영·이계진·이군현·이상민·이철우·임해규·정의화·정진섭·정희수·조문환·조윤선·조전혁·차명진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08. 6. 27 이성헌·김소남·강성천·김정권·안효대·임두성·현기환·황영철·강명순·신성범·이달곤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2008. 7. 29 류근찬·권선택·김낙성·김용구·박상돈·박선영·변웅전·이광재·이상민·이영애·이윤석·이재선·이진삼·이해봉·임영호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08. 7. 31 서상기·이한성·구본철·양정례·최연희·이해봉·한선교·김세연·안상수·조윤선·고흥길·김효재·박종근·김성곤·김충조·김영진·조전혁·박보환·허태열·김동성·황우여·현기환·정하균·김태환·나경원·이군현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보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09. 4. 1 강승규·강성천·권택기·손숙미·안상수·안효대·원희목·이애주·정태근·조진형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9. 4. 2 변재일·양승조·김상희·김효석·홍재형·강기정·박주선·강봉균·김재균·김종률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이광재・김재윤・김종률・백재현・백원우・손숙미・이계진・이시종・이용섭・정병국・최연희・최욱철・최철국・황영철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09. 4. 1 강승규・강성천・권택기・손숙미・안상수・안효대・원희목・이애주・정태근・조진형 의원 발의)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8. 5. 30 양승조・노영민・박병석・김성곤・안민석・서갑원・강기정・최규식・이종걸・김재윤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008. 9. 29 최문순・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동철・김영진・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효석・박선숙・변재일・서갑원・송영길・양승조・우제창・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용섭・이정희・이종걸・장세환・전병헌・주승용・최영희・홍희덕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8. 9. 1 이정현・박상돈・송민순・한선교・김태원・나성린・유성엽・정양석・김무성・이성헌・정영희・김영우・임두성・유승민・구본철・홍정욱・박선영・이명수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1 한선교・김을동・성윤환・현기환・이명규・서상기・김금래・김무성・조전혁・박종근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4 최문순・강기정・강창일・구본철・김성곤・김성순・김을동・김재윤・김종률・김창수・김효석・성윤환・송영길・송훈석・우제창・이용경・이종걸・장세환・전병헌・천정배・최규식・추미애・홍희덕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8. 12. 31 김재윤・강창일・김상희・김우남・김창수・안민석・양승조・이광재・이용섭・조배숙・천정배・홍희덕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8. 12. 31 박민식・권영진・김성식・김성태・김영우・김정훈・이진복・주광덕・현기환・황영철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9. 3. 23 최병국・최연희・최인기・이진복・정갑윤・정희수・홍장표・강창일・윤석용・손범규・정의화・장광근・이해봉・최재성・안상수・강길부・주성영・김옥이・유기준・주호영・이인기・강석호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9. 4. 1 변재일・이종걸・조영택・홍재형・이춘석・오제세・강봉균・양승조・김종률・김상희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 의원 대표발의)
(2009. 4. 2 김효재・노철래・한선교・김성순・유기준・강창일・박대해・김성태・윤상현・안홍준・송영길・주호영・황우여・김정권・이성헌・손범규・유성엽・안상수・김종률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
(2009. 7. 17 안형환・송영선・김성태・강석호・이춘식・홍사덕・강승규・박준선・이한성・박대해・이화수・이애주・여상규・허원제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9. 3. 2 손범규・유승민・정영희・유기준・유성엽・김태원・이한성・김성수・김효석・임동규・이시종・황영철・박준선・김기현・안상수・이화수・안효대・김소남・허태열・송영선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9 김재윤·강창일·김상희·김우남·김재균·김창수·박은수·박지원·송민순·안민석·양승조·이광재·이미경·이용섭·조배숙·천정배·홍희덕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09. 9. 10 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1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6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09. 8. 25 신성범·여상규·정해걸·정갑윤·유재중·원희룡·윤석용·권영진·황영철·손범규·김재경·조진래·박상은·진영·권경석·김성태·이해봉·이군현·이계진·유성엽·현기환·정태근·유기준·박민식 의원 발의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9. 6. 25 강기갑·이낙연·곽정숙·이정희·최철국·심대평·강창일·홍희덕·권영길·최인기·유성엽·김우남·김영진·김성곤·이한성·변재일·김낙성·황영철·정해걸·조진래·김춘진·우윤근·허천·이진삼·이계진·강석호·이용희·김효석·조배숙·류근찬 의원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8. 8. 8 김춘진·변재일·이계진·황영철·정해걸·최철국·유선호·류근찬·주승용·이인기·유성엽·이윤석·양승조·김종률·조경태 의원 발의)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

(2009. 6. 24 정해걸·정희수·김충조·김영진·서갑원·우윤근·이한성·유정복·유성엽·김성곤·이인기·박준선·임영호·오제세·박기춘·신성범·여상규·임두성·정갑윤·김무성·임동규·김종률·송훈석·백재현·배영식·장윤석·박종근·권영진·현경병·서병수·정영희·안규백·김우남·유재중·안효대·이용희·김광림·최구식·이화수·나성린·김성수·이철우·이계진·이해봉·정양석·이시종·성윤환·이윤석·김희철·이낙연·신영수·김재경·김선동·고승덕·한선교·김태환·김영록·김을동·김낙성·조문환·정수성·조원진·이춘식·조진래·이사철·김태원·최병국·이진복·강기갑·권경석·윤석용·김영우·권선택·유기준·강석호·정두언·이경재·이학재·류근찬·이범관·김성태·김소남·김세연·김부겸·김정권·김용구·고흥길·정세균·김성조·노철래·김옥이·홍정욱·정진석·장광근·조배숙·안홍준·이두아·주성영·이범래·황영철·허천·최규성·박보환·주호영·주승용·이진삼·박순자·권택기·정장선·김효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9. 10. 29 정부 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09. 4. 10 김영록·김영진·강운태·김우남·강기정·안규백·김동철·박주선·최인기·김효석·우윤근·김성곤·최영희 의원 발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9. 4. 24 김우남·양승조·강창일·안상수·김성수·김재윤·유성엽·이용희·강기갑·홍희덕·최규성·김영록·조경태·강기정·김동철·김을동 의원 발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9. 6. 4 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영진·김우남·심대평·유성엽·유원일·이정희·조승수·홍희덕 의원 발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2009. 7. 29 이군현·허원제·김성수·서상기·김소남·정진석·이애주·여상규·조전혁·조진래·임해규 의원 발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6. 18 김춘진·조경태·이윤석·이성남·김성곤·김재균·강기갑·유원일·이용희·김낙성 의원 발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09. 9. 10 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보고

제품안전기본법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4 배은희·오제세·이경재·안상수·홍장표·원유철·나성린·김동성·김태환·이성헌·정태근·김정훈·권영진·백성운·신지호·신성범·정갑윤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5. 27 정부 제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2009. 7. 15 최연희·최병국·허천·황영철·장광근·박종근·조진래·나성린·정태근·이계진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5 정부 제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9. 5. 18 최철국·전현희·이춘석·우윤근·조정식·이석현·김성곤·이용섭·이광재·주승용·박은수·안규백·김효석·전혜숙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

(2009. 7. 16 홍장표·김기현·신학용·이한성·신상진·정해걸·임동규·이화수·김성수·원희룡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09. 5. 18 김재균·전병헌·강기정·송민순·김동철·양승조·변재일·장세환·김유정·강창일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2009. 4. 20 박종희·이인기·손범규·강석호·이정선·양정례·박순자·허태열·이윤성·이진복·현경병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29 정부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8. 3 박상돈·이진삼·김용구·이명수·주승용·김창수·임영호·권선택·김낙성·심대평·이재선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7. 8 노영민·김창수·최철국·김상희·김종률·박상돈·김재균·주승용·이시종·이용삼·원혜영·박선숙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7. 14 임동규·이정선·신영수·유성엽·배영식·최철국·임두성·김성회·강석호·원희목·김태환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2009. 8. 27 조승수·강기갑·김상희·권영길·이종걸·박은수·유원일·김영진·이시종·유성엽·김재윤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9. 1 임동규·이한성·배영식·임두성·이해봉·이시종·이윤성·원희룡·유성엽·원희목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9 김성회·권성동·김재균·김태환·노영민·박순자·배은희·이종혁·이명규·주승용·정태근 의원 발의)

(이상 1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4 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4 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4 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4 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09. 6. 9 조원진·김성태·안홍준·유기준·유정복·이두아·이성헌·이인기·이해봉·이화수·정희수·한선교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2 심재철·박보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안상수·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2 심재철·박보환·안상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2 심재철·박보환·안상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0 이화수·정해걸·박대해·진성호·김성태·강성천·이명규·정갑윤·김성조·안형환·박민식·이진복·홍장표·송훈석·윤석용 의원 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09. 3. 13 김상희·김우남·김재균·양승조·김진표·김효석·김재윤·유원일·홍희덕·전현희·신낙균·박은수·강창일·최문순·이광재·김춘진·임영호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8. 7. 11 서갑원·김희철·김동철·김우남·신상진·이진삼·박기춘·박대해·김성순·이한성·유성엽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08. 12. 9 정진섭·강성천·조원진·노철래·손숙미·정갑윤·이경재·김성회·조해진·원유철·박준선·정진석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6 정부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09. 7. 1 손숙미·원희목·강명순·임두성·김성회·홍정욱·심재철·김정권·유재중·김효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09. 6. 9 김재균·송민순·김재윤·양승조·최철국·최재성·강기정·김동철·장세환·박은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3 조원진·강성천·박종근·박준선·유정현·이두아·이명규·이사철·이화수·정병국·조문환·허태열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9. 4. 17 임두성・김소남・이성헌・양정례・유성엽・임동규・윤석용・정해걸・이인기・한선교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11 정부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2 심재철・박보환・안상수・이애주・안형환・김태환・손숙미・안홍준・장광근・유정현・강석호・공성진・김성회・원희목・유재중・윤석용・이정선・임동규・강명순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3 정진섭・이화수・강성천・이윤성・심재철・조원진・박준선・박대해・조해진・이경재・안홍준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정부 제출)

(이상 1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8. 12. 16 임동규・이달곤・정희수・주성영・고승덕・이주영・임해규・이한성・원희목・임두성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09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이상 2건 2009. 12. 30 금융위원장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